



가발사용자 고객명단 부정취득 및 비밀유지의무 관련 사용금지 등 청구사건

30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15년(와) 제7588호, 평성15년(와) 제26800호
판결 일자	2005. 2. 23.	판결 결과	원고 패소
원고	주식회사 아트 네이처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프씨(S•F•C) 외 4명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영업 비밀	가발사용자의 고객명단, 고객진료카드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부정취득, 영업금지		

02 사건 개요

원고는 가발과 기타 모발에 관한 제품의 판매, 증모법의 지도 및 가발 이용자에게 이용, 미용 등의 역무제공을 영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모발 제품(가발 등)의 제조 및 판매, 이용업, 미용업, 건축의 설계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직하자 이들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한 후,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개발 리스트」 「고객진료기록카드」 라고 하는 서면 또는 컴퓨터에 기재 또는 기록된 「원고의 고객 및 신규 문의자에 관한 이름, 주소, 전화 번호, 근무처, 계약 상품, 입금액」 을 이용하여, 원고의 고객이었던 18명을 피고 회사의 고객으로 계약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금지되어있던 개인소유의 컴퓨터를 반입하여, 고리야마 집에 두고, 해당 컴퓨터에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건 고객 명단을 부정하게 취득했다.

피고들이 제출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퇴직 일로부터 2년 동안 경업 관계인 사업에 취직 또는 임원 취임 혹은 독립하여 경업하는 사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재되어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간, 경합 지역에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타사에 취직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흡수 합병절차를 거쳤지만 동 경업금지 합의는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피고들은 상사인 지역장의 허락 하에 혹은 요구에 의해 사유 컴퓨터 반입에 의한 관리를 하였다. 이후 정식으로 사유 컴퓨터의 반입이 금지되자, 피고들은 사유 컴퓨터를 자택에 가져갔다.

본건 계약서는 합병 전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이나, 이 취업 규칙은 근로기준법 90조의 노동자의 의견청취의 무 절차는 전혀 취해지지 않아서 무효이다. 원고회사는, 합병 후에도 적법한 취업 규칙의 제정, 변경 절차가 채택되어 있지 않다. 본건 경업 금지 규정은 퇴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04 판결 요지

피고들 상사의 허락 하에 혹은 상사의 요구에 의해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뿐, 원고로부터 개인 컴퓨터 반입 금지 지시가 떨어진 후에는 집에 가져갔으며, 그 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주장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종업원과 사용자 간에 체결되는 퇴직 후의 경업 금지에 관한 합의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유의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 등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취득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종업원이 취업 중에 얻은, 매우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지식, 경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경업금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은, 이미 구입한 가발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업 담당자 몇 명 및 기술 담당자 1명에 의해 행해지는, 가발의 유지 보수 및 미용업 등으로, 이것들은 피고들이 원고회사 취업 중에 일상 업무에서 얻은 지식, 경험, 기능을 이용한 업무이지 원고가 보유한 특유의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이용한 업무는 아니다.

05 Key Point

소위 말하는 '머리에 들어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사용 금지를 구하기는 어렵다.
